

## < 참고 문헌 >

- 김기홍, 「UR협상타결 이후의 손해보험 경쟁력 제고방안」, 『손해보험』, 1994. 5.
- \_\_\_\_\_, 「손보사 분리계정제도 도입방안」, 『손해보험』, 1994. 10.
- \_\_\_\_\_, 「우리나라의 OECD가입과 국내 손보사 대응방안」, 『손해보험』, 1995. 2.
- \_\_\_\_\_, 「손해보험산업의 국제화 전략」, 삼성화재 국제심포지움 자료, 1995. 8.
- 김인기, 김장희,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진단과 전망: 전문가 의견을 통한 분석」, 『금융학회지』, 1996, pp. 85-112.
- 보험감독원, 「1994년도 연차보고서」, 1995.
- \_\_\_\_\_,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 보험개발원, 「주요국의 보험자산운용 규제 및 현황」, 1996.
- 재정경제원 대외경제총괄과, 「OECD가입과 우리경제의 선진화」, 1996. 7.
- 조강필, 정영철, 「OECD가입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고찰」, 『보험조사월보』, 1996. 7.
- 통계청,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1995. 8.
- 한국경제연구원, 「OECD가입과 한국경제의 자유화」, 1996.
-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Insurance Review Statistics 1989-1993*.
- Balassa, B., "Trade Liberalization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1965, pp. 99-123.
- Donni, O. and F. Fecher,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Insurance Industry in The OECD Countries," 1995, mimeo.

- Dowling, W. Jay, "Insurance Industry 'Goes Global'," *Business America*, November 1, 1982.
- Ho, Ben, "Emerging Insurance Markets in Far East,"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April, 1995, pp. 141-147.
- Hogan, Arthur, Peruvemba Satish and Robert Witt,, "The Cost Structure of Distribution Systems in the U.S P/L Insurance Market,"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April, 1995, pp. 230-245.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1995*.
-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1987-1994*, 1996 ed.
- Shim, Hyung-Sup, "Understanding the Korean Insurance Market and Its Future Outlook", *The Geneva Paper on Risk and Insurance 75*, April, 1995, pp. 166-179.
- Shroath, Frederick W. and Christopher M. Korth. "Managerial Barriers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U.S. Property and Liability Insurers: Theory and Perspective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6*, December, 1989, pp. 630-648.
- Skipper, Harold D. "Protectionism and Provision of International Insurance Service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4*, March, 1987, pp. 55-85.
- Swiss Reinsurance Company, *Sigma*, 각년호.
- Tillinghast-Towers Perrin, *Insurance Pocket Book*, 1996.
- U. 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 S. Direct Investment Abroad*, 1994.
- Wolrath, Björn, "The Dynamics of the Scandinavian Insurance Market : Some Observations",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January, 1995, pp. 3-6.

Woodrow, R. Brian, "Insurance Services in the UR Services Negotiations : An Overview and Assessment of the Final Agreement,"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January, 1995, pp. 57-73.

<附錄 1> 保險關聯 OECD 資本移動 自由化規約內容 및 우리나라 關聯規程

자본이동자유화 항목	우리나라 제도	자유화 계획	비 고
<p>XIII. 생명보험(List A)</p> <p>생명보험계약에 따른 자본이동</p> <p>A. 비거주 보험업자가 거주자인 수익자에게 지불하는 자본 및 확정연금의 송금</p> <p>(비고) 생명보험계약에 관련되는 것중 확정연금 이외의 보험료, 연금의 송금은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D/3)의 적용을 받음. 생명보험계약 이외의 것에 의한 송금은 그 종류, 크기를 불문하고 항상 경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경상무역외규약의 적용을 받음.</p> <p>계약체결 당시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업자와 같은 국가의 거주자이었으나, 그후 거주지국이 변경된 경우에도 A, B의 송금은 자유임.</p>	<p>○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확정연금 등을 수취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요함.(외국환관리규정 제6-3조 제2항)</p>		<p>- 유보없음</p>

자본이동자유화 항목	우리 나라 제도	자유화 계획	비 고
<p>B. 거주자인 보험업자가 비거주 수익자에게 지불하는 자본 및 확정연금의 송금</p> <p>(비고) 생명보험계약에 관련되는 것중 확정연금 이외의 보험료, 연금의 송금은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D/3)의 적용을 받음. 생명보험계약 이외의 것에 의한 송금은 그 종류, 크기를 불문하고 항상 경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경상무역외규약의 적용을 받음.</p> <p>계약체결 당시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업자와 같은 국가의 거주자이었으나, 그후 거주지국이 변경된 경우에도 A, B의 송금은 자유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험료·보험금, 기타 보험사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지급은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필요(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제1항제6호 가목)</li> <li>○ 외국인거주자 또는 해외이주자가 외국에 이주한 후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의 지급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필요(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제1항제6호 나목)</li> </ul>		<p>- 유보없음</p>

<附錄 2> 保險關聯 OECD 經常貿易外去來 自由化規約內容 및 우리나라 關聯規程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 제도	자유화 계획	비고
<p>D. 보험</p> <p>D/1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p> <p>(비고)</p> <p>1. 다음 항목의 송금은 자유임.</p> <p>a. 타회원국에서 지불되어야 할 사회보장기여금 및 사회보험료</p> <p>b. 타회원국에 거주하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또는 이들을 위해 (직접 송금을 못하는 경우) 그 국가의 사회보장 또는 사회보험당국에 지불하는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급부</p> <p>2. 송금이 관련된 보험이 관련회원국중 한 나라에 의해서만 사회보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다 자유로운 조치를 부여하는 규정이 적용됨.</p> <p>3. 민간 보험업자가 수행하는 사회보험거래에 대해서는 부속서 I의 제III부 및 제IV부의 규정도 적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관련지급은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요함(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 제1항 제6호)</li> <li>-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험료·보험금, 기타 보험사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제비용</li> <li>- 수출물품의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가입하는 생산물책임보험의 보험료</li> <li>- 선주의 상호보험료</li> <li>○ 상기 이외의 보험료와 이에 부대하는 비용의 지급은 외국환은행본점의 장의 인증필요(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 제2항 제1호)</li> <li>○ 외국인거주자 또는 해외이주자가 외국에 이주한 후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의 지급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필요(외국환관리규정 제6-12조 제1항 제2호 나목)</li> <li>○ 사회보장기여금 및 사회보험료의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은 없으며, 현행 의료보험제도하에서는 타회원국과의 송금거래 발생여지가 없음.</li> </ul>		<p>- 유보없음</p>

경상무역의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p>원수보험(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이외의 보험)과 관련된 거래<sup>1</sup> 및 송금</p> <p><sup>1</sup> 여기에서 거래는 한 회원국의 피보험자와 타회원국 보험업자와의 원수보험계약 (direct insurance contract)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됨.</p> <p>(비고) 한 회원국의 보험업자와 타회원국의 피보험자간의 원수보험거래 및 두 개의 회원국에 거주하는 보험업자와 피보험자간의 보험료 및 기여금의 송금. 한 회원국의 보험업자에 의해서 타회원국에서 지불되었거나 지불되어야 할 보험금 및 급부금의 송금.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권행사에 필요한 금액의 송금. 부속서 I의 제1부에 정한 범위에 한함,</p> <p>* 이 조항은 D/2(국제교역상품관련보험), D/3(생명보험), D/4(기타 모든 보험)에 적용됨.</p>	<p>○ 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주로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보험업법 제2조 제2항)</p> <p>○ 보험사업은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위 불가(보험업법 제5조 제1항)</p> <p>○ 보험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에 한함(보험업법 제5조 제2항)</p> <p>○ 외국보험사업자의 허가신청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대한민국에서의 주된 점포가 포함됨(보험업법시행규칙 제9조)</p> <p>○ 외국보험사업자는 자본금에 대신하여 다음의 영업기금 필요(보험업법 제6조, 동시행령 제1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외국인을 대상으로하는 보험사업 : 30억원이상</li> <li>- 국내에서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하는 보험사업 : 5억원이상</li> <li>-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하는 보험사업 : 1억원이상</li> </ul> <p>○ 국내에서 보험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없음.</p>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p>&lt; 부속서 I 제1부 &gt;</p> <p>D/2 국제교역상품관련 보험</p> <p>1. 국제교역상품과 관련된 아래 보험계약 체결은 자유임. 단, 회원국은 그 보험업자 또는 보험사업을 하고자 하는 제3자의 영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음. 이 같은 계약의 이행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송금은 자유임.</p> <p>a) 어떤 회원국의 보험가입자와 동가입자 거주지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보험업자간의 계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험료·보험금, 기타 보험사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필요(외국환관리 규정 제6-11조 제1항 제6호 가목).</li> <li>○ 따라서 비거주 보험가입자와의 원수보험 계약에 따른 국내보험업자의 대외송금에는 제한없음.</li> <li>○ 누구든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함(보험업법 제4조).</li> <li>○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해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할 수 있는 경우(보험업법시행령 제11조)</li> <li>- 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li> <li>-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국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li> <li>- 보험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li> <li>-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수출입적하보험 또는 항공보험을 체결하는 경우</li> </ul>		<p>- 유보없음</p>



경상무역의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 제도	자유화 계획	비 고
<p>b) 어떤 회원국의 보험가입자와 동가입자 거주지국에서 설립된 외국보험업자간의 계약으로서,                      i) 그 외국보험업자의 본사에서 발효되는 것                      ii) 가입자의 거주지국 이외의 회원국에 소재하는 보험업자의 사업장에서 발효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승인하는 경우</li> <li>o 수출입에 직접 수반되는 보험료 및 보험금의 송금은 허가불필요 (외국환관리규정 제6-10조 제2호)</li> <li>o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외국보험사업자의 본점도 우리나라에 cross-border를 제공할 수 있음.</li> </ul>		<p>- 유보없음</p>
<p>&lt; 부속서 I 제1부 &gt;                      D/3 생명보험</p> <p>2. 어떤 회원국내의 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거주지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외국보험업자간의, 단체보험을 제외한, 생명보험과 관련된 거래 및 송금은 자유임. 단, 당해 회원국은 그 보험업자 또는 보험사업을 하고자 하는 제3자의 영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생명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소재 보험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은 불가하나, 국내에서 영위되지 않는 보험종목은 체결가능 (보험업법 제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11조)</li> </ul>	<p>o '97년 1월부터 자유화</p>	<p>- 유보없음</p>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 제도	자유화 계획	비고
<p>3. 기존계약에 대해</p> <p>a) 거주자의 비거주 보험업자에 대한 보험료 송금은 자유임</p> <p>b) 거주보험료의 비거주 보험수익자에 대한 연금(annuity)<sup>1</sup> 및 보험연금(annuity)중 확정연금 이외의 송금은 자유임</p> <p><sup>1</sup> 생명보험과 관련되는 자본이나 확정연금의 송금은 자본이동 자유화규약(List A/XIII)의 규제대상임.</p> <p>4. 지급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상 공제를 허용하는 회원국은 그 보험업자의 설립장소(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하고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는 인정되고 있음 (보험업법시행령 제11조 제2호)</li> <li>○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험료·보험금, 기타 보험사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필요(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 제1항 제6호)</li> <li>○ 기타 보험료와 이에 부대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본점의 장의 인증필요(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 제2항 제1호)</li> <li>○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다음 지급보험료는 당해년도 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함 (소득세법 제61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보험료</li> <li>-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등으로서 만기 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li> </ul> </li> <li>○ 세법상 보험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설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주자의 지급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li> </ul>		<p>- 유보없음</p> <p>- 유보없음</p> <p>- 유보없음</p>

경상무역의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 제도	자유화 계획	비고
< 부속서 I 제1부 >			
D/4 기타 모든 보험			
<p>5. D/2(국제교역상품관련보험) 및 D/3(생명보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종목중 단체보험 및 보험신청인의 거주지국에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을 제외한 보험과 관련된 것으로서 어떤 회원국내의 신청인과 그 신청인 거주지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외국보험업자간의 거래 및 송금은 자유임. 단, 보험가입자의 거주지국은 당해 보험업자 및 보험사업을 하고자 하는 제3자의 영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음.</p>	<p>○ 손해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자와의 국소계 보험사업자와의 보험계약체결은 불가하나 국내에서 영위되지 않는 보험종목 및 항공보험은 체결가능(보험업법 제4조, 동시행령 제11조).</p>	<p>○ '97년 1월부터 장기상해, 선박, 여행보험 자유화</p>	<p>- 유보</p>
<p>6. 위험이 존재하는 회원국에서 위험의 부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와 가입자 거주지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외국보험업자간의 거래 및 송금은 자유임.</p>	<p>○ 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의 보험계약은 가능하며(보험업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보험료의 송금은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사항임(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 제1항 제6호 가목)</p>		<p>- 유보없음</p>
<p>7. 지급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상 공제를 허용하는 회원국은 그 보험업자의 설립장소(국내 또는 국외)에 상관없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함.</p>	<p>○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다음 지급보험료는 당해년도 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함(소득세법 제61조의 2)</p> <p>- 의료보험료</p> <p>-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으로서 만기 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p> <p>○ 세법상 보험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설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주자의 지급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p>		<p>- 유보없음</p>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 나라 제도	자유화 계획	비 고
8. a) 보험업자가 자신을 위해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보험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정산되거나,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될 배상금을 송금하는 것은 자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험료·보험금, 기타 보험사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필요(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 제1항 제6호 가목)</li> </ul>		- 유보없음
b) 보험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부대비용 또는 기타금액의 송금은 자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험료·보험금, 기타 보험사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필요(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 제1항 제6호 가목)</li> </ul>		- 유보없음
c) 개별적으로 정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회원국은 자국내에서 설립된 보험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상호협정에 의하여 보험청구를 정산하는 경우 양측의 지불금을 상쇄하고, 그 차액을 송금하는 것을 승인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업자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증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및 공탁금이자 등을 지급 또는 영수함에 있어서 그 대차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요하지 않음(외국환관리규정 제7-5조 제1항 제4호)</li> </ul>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p>D/5 재보험 및 재재보험과 관련된 거래 및 송금</p> <p>(비고) 부속서 I의 제II부의 규정도 적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내의 보험사업자와 비거주자간에 의화표시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 체결은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관리규정 제 10-101조 제6호).</li> <li>○ 재보험 및 재재보험의 국경간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보험물건에 대한 국내사 우선출재제도 및 해외요율구득에 대한 제한이 있음.</li> </ul> </li> <li>○ 국내사우선출재제도(재보험관리규정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원보험회사들이 재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국내보험회사(국내진출 외국보험회사 포함)에 우선출재하여야 함(항공보험 제외).</li> <li>- 국내사 초과분이나 국내사가 재보험인수들 거부한 보험물건에 대해서는 해외직접출재가능</li> </ul> </li> <li>○ 해외요율구득에 대한 제한(보험요율구득에 관한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원보험사와 대한재보험(주)간에 재보험특약이 있는 보험의 요율을 해외로부터 구득할 경우 대한재보험(주)를 통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보험요율구득 장구 일원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 4월 선박, 자동차, 보충,적하, 상해, 근재, 장기보험등</li> <li>- '97.4월 안전자유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보없음</li> </ul>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 제도	자유화 계획	비고
<p>&lt; 부속서 I 제Ⅱ부 &gt;</p> <p>D/5 재보험 및 재재보험</p> <p>1. 현금손실과 관련된 계정뿐 아니라 출재보험업자가 보유하는 보증예탁금의 설치 및 조정을 포함한 재보험거래와 관련된 계정은 재보험협약 또는 약정의 규정에 따라 원보험 계약상의 통화, 출재보험업자 거주지국 통화 또는 수재보험업자 거주지국통화로 개설될 수 있음</p> <p>2. 제1항에 언급된 계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의 정산은 승인되어야 함. 그 정산은 출재보험업자와 수재보험업자 상호간의 받을 금액을 상쇄하거나, 또는(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아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p> <p>a) 받을 금액이 있는 보험자 거주지국으로의 송금, 또는</p> <p>b) 아래 제3항에 의거하여 개설된 은행계정을 통한 지불, 또는</p> <p>c) 만약 당해 계약에서 타회원국 통화로 지불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그 타회원국에서 아래 제3항에 의거하여 개설된 은행계정으로의 송금</p>	<p>○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내의 보험사업자와 비거주자간에 외화표시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 체결은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관리규정 제10-101조 제6호).</p> <p>○ 거주자인 보험사업자는 재보험거래와 관련된 계정을 원화 및 외화로 개설할 수 있음(외국환관리규정 제10-29조, 제1항). 비거주자인 보험사업자도 재보험거래와 관련하여 외화표시 은행계정과 자유원계정을 개설할 수 있음(외국환관리규정 제10-20조 제2항).</p> <p>○ 보험사업자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해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중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및 공탁금이자 등을 지급 또는 영수함에 있어서 그 대차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요하지 않음(외국환관리규정 제7-5조 제1항 제4호).</p>		<p>- 유보없음</p> <p>- 유보없음</p>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p>3. 재보험자가 회원국에서 설립된 은행에 계정을 개설하는 것은 승인되어야 함. 상기 제2항 b) 및 c)의 규정에 따라 정산되는 재보험거래로 인하여 계정보유자에게 지불될 금액은 이 계정에 입금될 수 있음. 만약 재보험정산이 제2항 b) 및 c)의 규정에 따르고 통상의 관행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계정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이 계정에서 정산금액이 출금될 수 있음. 또한 동계정 잔액은 당해 계정을 보유하는 재보험업자 거주지국으로 송금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재보험사업자는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외국환은행에 외화표시 은행계정 및 자유원계정을 개설할 수 있음(외국환관리규정 제10-20조 2항)</li> <li>○ 계정의 잔액도 당해 계정을 보유하는 재보험사업자의 거주지국으로 송금될 수 있음(외국환관리규정 제10-2조, 제10-26조, 제10-35조의 3, 4)</li> <li>○ 상גיע정의 재보험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입·출금은 자유임.</li> </ul>		- 유보없음
<p>4. 제1항 내지 제3항의 제규정은 재재보험의 경우에도 적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보험에 관한 각종 규정은 재재보험에도 적용됨.</li> </ul>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p>D/6 외국보험업자의 지점·대리점 설치 및 영업에 관한 조건</p>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타회원국 보험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영업에 관한 부속서 I 의 제Ⅲ부에 규정된 범위내에서의 승인</li> <li>2. 이 같이 승인받은 보험업자의 지점 및 대리점과 그 본사간의 송금: 부속서 I 의 제Ⅳ부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적용됨.</li> </ol> <p>&lt;부속서 I 의 제Ⅲ부&gt;</p> <p>D/6 외국보험업자의 지점·대리점 설치 및 영업에 관한 조건</p> <p>- 일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에 관한 모든 법령상, 행정상 규제는 내외국 보험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외국보험업자는 내국보험업자보다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않아야 함.</li> </ol>	<p>○ 보험업법상 유일한 내·외국보험업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자본금 또는 기금” 관련 사항임(보험업법 제6조, 동시행령 제12조)</p>		<p>- 유보없음</p>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 제도	자유화 계획	비고
<p>- 승인</p> <p>2. 어떤 회원국내에서 보험회사의 설립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p> <p>a) 그 회원국은 자국보험업자에게 대한 것과 동일하게 타회원국 보험업자를 대우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보험사업자는 생명보험사업의 경우 100억원 이상, 손해보험사업의 경우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함.</li> <li>- 외국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영업기금을 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 : 30억원이상</li> <li>·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 : 5억원이상</li> <li>·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의 모집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 1억원이상</li> </ul> </li> <li>○ 금액의 규모로 보아 내·외국 보험사업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음</li> <li>○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대상자는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에 한함(보험업법 제5조).</li> <li>○ 허가와 관련하여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한 차별대우는 없음.</li> </ul>		<p>- 유보없음</p>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p>b) 관련당국은 승인을 신청하는 외국보험업자에게 승인을 위하여 당해보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정보를 충분하게, 그리고 자세히 기재한 서면안내장을 제공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전에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적절히 간소화하고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업 허가신청시 제출서류는 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음(보험업법 제5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9조)</li> <li>○ 또한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영문자료를 발간·제공하고 있음.</li> <li>- 외국생명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 허가기준</li> <li>- 외국손해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 허가기준</li> </ul>		- 유보없음
<p>c) 승인을 위하여 법률·재무·회계·기술적인 요건(가령 사업형태 관련요건, 이사 또는 관리자의 자격, 재보험약정 등의 요건) 이외의 다른 기준, 특히 국내보험시장의 수요와 같은 경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당국은 보험업자의 승인신청시 이들 기준을 고지하고, 내외국 보험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상 경제적 수요심사(ENT:Economic Needs Test)를 한다는 기준이 있으며 내·외국보험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함</li> </ul>	- '97년 1월부터 ENT 폐지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 제도	자유화 계획	비고
<p>d) 관련당국은 다른 회원국 보험업자의 승인신청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시 당해 보험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신청서가 하자없이 작성되어 제출된 경우 심사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외국생명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 허가기준 및 외국손해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 허가기준)</li> </ul>		- 유보없음
<p>e) 관련당국이 타회원국 보험업자에게 승인신청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정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내국보험업자에게 대한 것과 동일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업허가 담당공무원은 허가신청서류의 내용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신청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외국생명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 허가기준, 외국손해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 허가기준).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한 차별은 없음.</li> </ul>		- 유보없음
<p>f) 타회원국 보험업자의 승인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관련당국은 그 결정이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내국보험업자에 대한 것과 동일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신청 기각시 기각사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한 차별은 없음</li> </ul>		- 유보없음
<p>g) 승인이 기각되거나 관련당국이 상기 d)항에 언급된 6개월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신청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타회원국 보험업자는 내국보험업자가 갖는 것과 동일한 이의신청권을 가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의신청에 대하여 별도규정이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내·외국인 보험사업자 차별은 없음</li> </ul>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p>- 대표자</p> <p>3. 회원국 보험업자가 타회원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보험업자는 그 타회원국에 주거를 갖고 있거나 사실상 거주하는 자를 대표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적은 불문함.</p> <p>- 재정보증<sup>1</sup></p> <p><sup>1</sup> 본 규약의 목적상 “재정보증”이라는 용어는 정액 또는 최초예탁금, 조정가능예탁금 및 변동예탁금으로 구성된 자산과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 준비금 및 기타 준비금으로서 보험업자의 사업수행지국에서 유지하여야 하는 준비자산을 포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액 또는 최초예탁금(fixed or initial deposit) : 보험업자가 하나 이상의 지점에서 영업개시 이전에 사업수행지국의 특정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금액</li> <li>· 조정가능예탁금(adjustable deposit) : 보험업자의 사업정도에 따라 조정되는 예탁금으로서 기술적준비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li> <li>· 변동예탁금(variable deposit) : 보험업자의 사업정도에 따라 조정되고 기술적준비금에 산입될 수 있는 것</li> </ul>	<p>○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선임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 상주하여야 함(외국생명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허가기준 및 UR서비스 양허표).</p>		<p>- 유보없음</p>

경상무역의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적준비금(technical reserve) : 보험업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별도로 보유하는 금액</li> <li>○ 일반규정</li> <li>4. 회원국은 현재 및 장래의 법령상 및 행정상의 보험규제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와 기타 청구인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타회원국 보험업자의 재정보증금액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여 보험업자의 자산분산을 방지하여야 함. 보증에 탁은 이같은 보호목적에 한정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보험사업자에게만 요구되는 예탁금은 없음.</li> <li>○ 내·외국 보험사업자는 영업개시전에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30%를 보험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탁금의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li> <li>· 해산 또는 사업폐지시</li> <li>·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li> </ul> </li> </ul> </li> <li>○ 내·외국대리점은 영업개시전에 다음의 영업보증금을 소속회사에 예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대리점 : 2백만원</li> <li>· 법인대리점 : 4백만원</li> </ul> </li> <li>- 손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급대리점:개인(2백만원),법인(4백만원)</li> <li>· 일반대리점:개인(2.5백만원),법인(5백만원)</li> <li>· 총괄대리점:개인(3백만원),법인(8백만원)</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보없음</li> </ul>

경상무역의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p>○ 정액 또는 최초예탁금 및 조정가능예탁금에 관한 규정</p> <p>5. 자국 보험업자 또는 자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타회원국 보험업자에게 정액 또는 최초예탁금 및/또는 조정가능예탁금을 요구하는 회원국은,</p> <p>a) 정액 또는 최초예탁금을 기술적준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뿐 아니라 이 같은 예탁금의 액수 및 산출에 있어서 자국보험업자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타회원국 보험업자를 대우하여야 함.</p> <p>b) 그 재량에 의해 아래 i), ii)의 한도 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아래 수단에 의해 예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즉,</p> <p>i) 소요예탁금액 한도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점이 그 회원국에 소개하고 있는 인가받은 은행의 보증, 또는</li> <li>- 본점이 그 회원국에 소개하고 있는 인가받은 보험업자의 보증. 그 보증은 보증보험증권의 에치로 성립됨. 또는</li> </ul>	<p>○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의 산출과 기술적준비금의 산입에 있어서 내·외국보험사업자간에 차별은 없음(보험업법 제6조의 2 및 제98조)</p> <p>○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의 50%의 범위안에서 본국통화 또는 보험감독장관이 정하는 본국통화표시 유가증권으로 예탁가능(보험업법시행령 제12조의 2)</p> <p>○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음(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p>		<p>- 유보 없음</p> <p>- 유보없음</p>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 제도	자유화 계획	비 고
<p>- 본점이 그 회원국에 소재하고 있는 인가받은 은행 또는 보험업자에 의한 증권예치로서, 해당 보험업자의 이름으로 또는 그의 계정에 예치되었음이 선언된 것</p> <p>ii) 소요 예탁금액의 적어도 50%의 한도 내에서</p> <p>- 보험업자의 본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통화예치 및/또는 그 국가의 통화로 표시된 증권의 예치. 단, 동증권이 보험업자가 영업하고 있는 국가에서 결제가능하거나, 만약 동증권이 보험업자 본사 소재지국에서 매각되어야 할 경우, 그 당해국 당국은 증권판매대금의 송금을 승인하여야 함. 이 같은 보증에 이용될 증권 및 통화는 먼저 당해보험업자가 영업하고 있는 국가의 보험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p> <p>이러한 증권과 통화는 유사한 국내자산의 구성 및 이용을 규제하는 법규에 따라 동 보험감독관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함.</p>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p>6. 자국 보험업자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정액 또는 최초예탁금 및/또는 조정가능예탁금을 자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타회원국 보험업자에게 요구하는 회원국은 그 재량에 의해 적어도 예탁금의 50%는 아래의 것들에 의해 대체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함.</p> <p>a) 본사가 그 회원국에 소재하고 있는 인가받은 은행의 보증, 또는</p> <p>b) 본사가 그 회원국에 소재하고 있는 인가받은 보험업자의 보증. 그 보증은 보증보험증권의 예치로 성립됨. 단, 정액 또는 최초예탁금이 기술적지불준비금 또는 자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타회원국 보험업자에게 요구되는 기타 보증의 일부로 산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p> <p>○ 변동예탁금 및 기술적준비금에 관한 규정</p>	<p>○ 외국보험사업자에게만 요구되는 예탁금제도는 없으며, 내·외국사를 불문하고 예탁하여야 함(보험업법 제6조의 2).</p>		<p>-- 유보 없음</p>
<p>7. 자국 보험업자 및 자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타회원국 보험업자 모두에게 변동예탁금을 요구하는 회원국은 변동예탁금 산출 및 기술적준비금에의 산입요건에 있어서 자국보험업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대우를 타회원국 보험업자에게 부여하여야 함.</p>	<p>○ OECD 규약상의 변동예탁금에 해당하는 제도는 없음. 기술적 준비금(책임준비금 등)에 있어서는 내·외국사를 불문하고 모두 요구되며, 내·외국보험사업자간에 차별은 없음(보험업법 제98조)</p>		<p>-- 유보 없음</p>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 제도	자유화 계획	비고
<p>8. 자국 보험업자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변동예탁금 또는 기술적준비금의 예탁을 자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타회원국 보험업자에게 요구하는 회원국은 그 준비금 및/또는 예탁금의 계산방법이 자국 보험업자에게 적용되는 관례적인 규정보다 더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여야 함.</p> <p>- 투자 및 예치의 규제</p> <p>○ 일반규정</p> <p>9. 각 회원국은 상기 제5항 b) ii)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투자의 선택 및 평가 그리고 감가상각의 조정에 있어서 자국 보험업자와 자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타회원국 보험업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p>	<p>○ OECD 규약상의 변동예탁금에 해당하는 제도는 없음. 기술적 준비금(책임준비금 등)에 있어서는 내·외국사를 불문하고 모두 요구되며, 내·외국보험사업자간에 차별은 없음(보험업법 제98조)</p> <p>○ 내·외국보험사에 대하여 동일한 자산운용준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동산취득에 있어서는 외국보험사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함.</p>	<p>- '95년말 신고제로 전환</p>	<p>- 유보없음</p> <p>- 유보없음</p>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p>10. 어떤 회원국이 자국 보험업자 및 자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타회원국 보험업자 모두에게 투자예탁금을 요구하는 경우, 동회원국은 예탁방법에 있어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p>	<p>○ 보험사업자에 대해 투자예탁금을 요구하지 않음.</p>		<p>- 유보없음</p>
<p>11. 어떤 회원국이 타회원국의 보험업자에 게만 투자예탁금을 요구하는 경우, 동요구는 예탁된 투자의 선택 및 평가에 있어서 자국 보험업자에 대한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이어서는 안됨.</p>	<p>○ 보험사업자에 대해 투자예탁금을 요구하지 않음.</p>		<p>- 유보없음</p>
<p>12. 어떤 회원국이 자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타회원국 보험업자에게 기술적준비금에 산입되는 투자예탁금을 요구하고, 자국 보험업자에게는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예탁금 산출에 있어서 아래의 것이 공제되어야 함.</p> <p>a) 생명보험, 결혼 및 출산보험 그리고 자본회수사업 이외의 종류의 사업의 경우, 보유 또는 은행에 예치한 현금 및 3개월미만된 미회수보험료 또는 공동인수보험료(조세, 공과금, 수수료 제외). 단,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30% 한도내에서 공제됨.</p>	<p>○ 보험사업자에 대해 투자예탁금을 요구하지 않음.</p>		<p>- 유보없음</p>

경상무역의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p>b) 생명보험, 결혼 및 출산보험 그리고 자본회수사업의 경우</p> <p>i) 전회계년도의 보험료수입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한도내에서 보유 또는 은행에 예치한 현금</p> <p>ii) 3개월미만된 미회수보험료 또는 공동인수보험료(조세, 공과금 및 수수료 제외금액)의 90%한도내에서 공제됨.</p> <p>○ 투자승인</p> <p>13. 각 회원국은 자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타회원국 보험업자에게 최대한의 투자선택을 허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p>	<p>○ 보험회사재산운용준칙</p> <p>- 재산운용의 기본방향(제4조) : 그 재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운용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 및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여야 함.</p> <p>- 재산이용은 총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비율 초과 불가(제7조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의 소유 : 30%</li> <li>· 부동산소유(업무시설용 10%, 투자사업용 5%)</li> <li>· 동일인에 대한 대출 : 3%(다만, 총자산 1조원 초과회사는 300억원+1조원 초과금액의 1.5% 이내)</li> <li>·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투자 : 5%</li> </ul>		<p>- 유보없음</p>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p>14. 명백하게 지정된 투자이외에, 보험감독에 대한 각 회원국의 법률 및 규정은 타회원국의 보험업자가 해당회원국 당국이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당국이 인정하는 다른 투자방법에 의해서 기술적준비금 및 예탁금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물건 담보대출 : 3%</li> <li>·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투자 및 대출 : (투자 5%, 대출 5%)</li> <li>·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투자 및 대출 : (투자 3%, 대출 3%)</li> <li>· 중소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소유 : 0.2%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li> <li>· 비상장주식 : 자기자본이내</li> <li>· 외화증권 등에의 투자 : 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는 투자종목별로 상한선을 정하여 투자다양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유보할 필요가 있음.</li> <li>○ 각 투자종목별 상한선(보험회사재산운용준칙 제7조)을 지키는 한 언급되지 않는 기타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가 가능함.</li> <li>○ 그러나 보호예탁금은 현금으로 납입되어 해당 보험사업자와의 협의하에 보험감독원이 운용하므로 보험업자에 의해 기타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음.</li> </ul>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 제도	자유화 계획	비고
<p>15. 각 회원국은 기술적준비금 및 변동예탁금중(정액 또는 최초예탁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 적어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자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타회원국의 보험업자가 자국내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함.</p>	<p>○ 보험회사의 부동산 취득한도는 총자산의 15%임.</p> <p>- 부동산담보대출에는 제한이 없음.</p>		- 유보없음
<p>○ 투자변경</p> <p>16. 주기적인 조정기간중 어느 시점에서 어떤 회원국의 보험업자가 기술적준비금의 예탁을 요구하는 다른 회원국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예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탁되었음을 그 다른 회원국의 보험감독관에게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감독관청은 예탁금 초과분의 인출을 지체없이 승인하여야 함.</p>	<p>○ 우리나라는 기술적준비금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의 예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초과예탁분 환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p>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 제도	자유화 계획	비고
<p>17. 회원국은 자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타회원국의 보험업자가 최소한의 질차를 통해 투자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함.</p> <p>a) 특히, 아래의 경우에 다른 투자에 의한 사전대체를 요구할 수 없음</p> <p>i) 보험감독관청의 사전승인에 의하여 예탁증권이 동일한 인가기관에서 인출, 대체되는 경우, 그리고</p> <p>ii) 예탁증권이 당해보험업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나 부동산 담보에 의하여 대체되는 경우. 단, 그 대체는 짧은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함.</p> <p>b) 사전대체가 면제될 수 없는 기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보험감독관청은 최소한의 지체로 그 같은 대체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 및 기타 청구인 보호를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과징금을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함.</p>	<p>○ 보험사업자에 대한 투자예탁금을 요구하지 않음.</p>		<p>- 유보없음</p>

<附錄 3> 우리나라의 OECD 가입추진경과

시 기	현 황
1. '70년대 • '78.6 • '7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루멘탈 미국 재무장관, 우리나라의 OECD가입거론</li> <li>• 칠강위원회 설립직후 우리나라 가입초청</li> <li>• 무역위원회 산하 수출신용그룹에 옵저버 참여 요청</li> </ul>
2. '80년대 • '80.1 • '88.4 • '89.1 • '89.3  • '8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사무국, 우리나라와 경제협의회 개최제의</li> <li>• 동경개최 미·일·유럽의 고위급회의시 한국의 OECD 가입권유</li> <li>• OECD사무총장, ANICs중 한국을 유력한 가입후보국으로 지칭</li> <li>• OECD에 연락관(Liaison Officer)파견 및 우리나라 공무원 OECD연수 최초파견(개발센터)</li> <li>• 페이에 사무총장, OECD 회원국후보로 우리나라 거론 (일본가입 25주년기념 회의시)</li> </ul>
3. '90년대 • '90.2 • '91.4, 9, 11 • '91.10  • '91.11 • '92.1 • '92.4 • '93.6  • '93.7 • '94.2 • '94.6  • '95.3 • '95.11 • '95.12 • '96.2 • '96.4 • '96.5 • '96.6 • '96.7 • '9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조선실무작업반 정식가입 추진결정</li> <li>• 3차에 걸쳐 정부조사단 파견</li> <li>• 페이에 사무총장, 외무장관초청으로 방한 - 한국정부, "90년대 중반 OECD가입의사" 표명</li> <li>•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개발 7차계획 설명회 개최</li> <li>• 제7차 5개년계획 심의회에서 "7차 5개년계획 후반기에 OECD 가입추진"키로 확정</li> <li>• OECD각료이사회, 한국의 가입문제 협의 - 한·OECD간 공식접촉 확대를 환영</li> <li>• OECD각료이사회 성명에 "한국의 OECD 참가활동 확대를 환영"하는 내용포함</li> <li>• 신경제 5개년계획 "96년 OECD가입"계획 확정</li> <li>• 경제동향검토위원회(EDRC)/한국경제검토회의 개최(파리)</li> <li>• 각료이사회에서 한국과의 가입조건 협의에 관한 권한을 사무국에 위임</li> <li>• 가입신청서 제출</li> <li>• 해운위원회 심사 종료</li> <li>• 보험위원회 심사 종료</li> <li>• 금융시장위원회 심사 종료</li> <li>• 1차 CIME/CMIT 심사</li> <li>• 환경위원회 심사 종료</li> <li>• 재정위원회 심사 종료</li> <li>• 2차 CIME/CMIT 심사 종료</li> <li>• OECD이사회, 만장일치로 한국을 OECD회원국으로 초청키로 결정</li> </ul>

資料: 재정경제원 대외경제총괄과, 「OECD가입과 우리경제의 선진화」, 1996. 7.

<附錄 4> OECD會員國 生保社의 資産運用收益率 推移

(單位: %)

년 도 국 가	1990			1991			1992			1993			1994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오스트리아	7.35	7.47	8.06	7.76	7.85	8.56	6.49	7.12	8.04	4.85	4.98	3.90	4.55	4.55	-
덴 마 크	8.98	9.92	-	7.51	8.35	8.84	6.86	7.91	8.99	5.06	5.82	6.69	5.31	5.91	6.48
네 덜 란 드	9.32	9.69	9.52	9.65	9.79	10.31	9.67	9.53	9.49	7.40	7.57	7.62	6.45	6.63	6.93
포 르 투 갈	1.46	0.61	3.18	0.68	0.26	2.24	0.57	0.12	1.13	0.57	0.61	0.59	0.50	0.58	0.77
캐 나 다	10.93	11.85	10.96	8.59	9.40	8.96	6.93	7.38	7.57	5.95	6.73	6.37	6.64	7.40	7.07
미 국	8.42	8.42	8.80	7.47	7.44	7.71	6.32	6.29	6.00	5.45	5.41	5.00	6.60	6.59	5.82
일 본	4.57	5.48	6.15	4.90	5.54	5.71	3.90	4.80	4.35	2.93	3.56	3.34	2.57	2.74	2.62
한 국	8.74	12.59	13.48	9.56	13.21	13.64	9.10	11.44	13.88	7.56	8.69	11.13	7.65	8.45	11.75



<附錄 5> OECD 會員國 損保社의 資産運用收益率 推移

(單位: %)

년 도 국 가	1990			1991			1992			1993			1994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오스트리아	7.08	7.22	8.36	6.35	6.71	7.53	3.86	5.20	7.00	3.65	4.07	5.63	3.55	3.96	5.80
덴 마 크	5.93	7.47	-	5.08	7.01	-	6.03	6.91	-	4.82	4.24	-	5.21	3.09	-
네 델 란 드	9.19	8.03	7.76	9.08	8.64	7.96	9.08	7.81	7.26	6.99	5.92	5.64	6.36	5.99	6.06
포 르 투 갈	5.04	7.37	3.22	3.95	2.76	3.19	3.04	2.32	2.65	2.85	2.41	1.89	2.17	1.72	1.58
캐 나 다	9.20	8.29	10.19	8.04	7.46	9.25	5.78	6.65	8.05	5.17	5.91	7.23	6.25	6.56	8.00
미 국	6.88	6.25	6.42	6.27	6.16	6.06	5.48	6.02	5.82	4.65	4.60	4.81	5.67	5.58	5.99
일 본	5.25	7.24	6.57	5.13	6.49	5.95	3.91	4.99	-	2.88	3.69	-	2.70	3.68	3.13
한 국	8.77	-	12.76	9.60	-	14.05	8.80	-	12.73	6.72	-	9.48	6.64	-	10.28